



# 정신 건강 장애 세입자가 보조 동물이나 반려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권리

## 정신 건강 서비스 수요자 및 가족용

### 1. 주거 시설의 “적절한 편의”란 무엇일까요?

캘리포니아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주법과 연방법<sup>1</sup>에 의거하여 주택 판매 또는 임차 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임대주<sup>2</sup>, 소유주 또는 기타 주거 시설 제공자 또는 부동산 소개업자가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임대 또는 판매를 거부하거나 기타 유형의 차별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 시설 제공자는 또한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세입자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곧 주거 시설 제공자가 정신

---

<sup>1</sup>캘리포니아 공정고용 및 주택법(California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에서는 "장애(disability)" 대신 "핸디캡(handicap)"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의미는 같습니다.

<sup>2</sup>단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면서 세입자에게 방 하나만 대여하는 임대주는 제외됩니다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해당 주거 시설을 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규칙이나 정책 또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거 시설의 적절한 편의를 요청할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 사실 보고서, 정신 건강 장애 세입자: 주거 시설의 적절한 편의를 요구할 권리(Tenants with Mental Health Disabilities: The Right to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Housing)를 참조하십시오.*

## 2. 반려 동물과 보조 동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보조 동물은 신체 또는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된 동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때 이를 인식하고 문제가 가라앉을 때까지 주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훈련 받은 개의 경우입니다. 반려 동물이란 사람을 돕는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은 받지 않았으나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동물을 말합니다.

## 3. 보조 동물이나 반려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애완동물 불가 규칙을 포기해달라고 임대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임대주 또는 주거 시설 제공자는 장애가 있는 세입자가 보조 동물이나 반려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로서 "애완동물 불가" 규칙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sup>3</sup> 그러나 다음과 같은 동물의 경우에는 적절한 편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거나 주택에 상당한 물리적 피해를

---

<sup>3</sup> 2011년에는 미국 장애인법(ADA)에 의거하여 레스토랑, 상점 및 기타 업체에서 장애가 있는 고객의 적절한 편의로서 보조견만을 허용하고 반려 동물이나 다른 보조 동물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장애가 있는 세입자가 개가 아닌 다른 보조 동물이나 반려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권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기하거나 임대주에게 부당한 재정적 또는 관리상의 부담을 주거나 임대주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 경우. 보조 동물이나 반려 동물의 소유자는 해당 동물을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동물이 주 및 지역의 동물 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고 지역사회에 위험이나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4. 적절한 편이로서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조 동물이나 반려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요청할 때는 가능한 한 서면으로 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세입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며 애완동물 불가 정책에 대한 적절한 편이로서 동물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 시설 제공자에게 특정 날짜 이전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요청에 대해 주거 시설 제공자는 세입자에게 장애가 있고 이 사람이 보조 동물이나 반려 동물을 키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세입자의 의사나 다른 의료 전문가 작성한 서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 시설 제공자가 요청자의 의료 기록이나 특정 진단서 또는 요청자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직접 면담 허용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 5.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주택 차별을 보호하는 주법 및 연방법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800-776-5746

TTY: 800-649-0154

[www.disabilityrightscalifornia.org](http://www.disabilityrightscalifornia.org)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사실 보고서를 읽은 다음 간단한 설문 조사를 통해 귀하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영문 버전: <http://fs12.formsite.com/disabilityrightsca/form54/index.html>

스페인어 버전: <http://fs12.formsite.com/disabilityrightsca/form55/index.html>

낙인, 차별, 축소 및 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 개발 프로그램(Advancing Policy to Eliminate Discrimination Program, APEDP)은 유권자의 승인을 얻은 정신 건강 법령(Mental Health Services Act(제안 63))에 의해 자금 후원을 받고 캘리포니아 정신 건강 담당기관(California Mental Health Services Authority(CaMHSA))에 의해 관리됩니다. 카운티 MHSA 기금은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카운티 정부 기관인 CaMHSA를 지원합니다. CaMHSA는 주 전체, 구역 및 지역 기반의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almhsa.org>를 방문하십시오.

